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위탁동의(안) 검토보고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준공을 앞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(독산, 용정) 및 총인처리시설,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위탁재산 현황(독산)

- 건물명 : 독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
- 위 치 :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340
- 규 모 : 계획처리인구 1,094명, 처리면적 376,700㎡
 부지 1,013.6㎡, 시설용량 220㎥/일, 관거 L=7.2km
- 설치비 : 8,106백만원(국비5,674, 기금1,459, 도비486, 군비487)
- 운영비 : 50,391천원(인건비 21,150, 경비 18,512, 기타 10,729)

□ 위탁재산 현황(용정)

- 건물명 : 용정소규모하수처리시설
- 위 치 :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82-4
- 규 모 : 계획처리인구 331명, 처리면적 123,700㎡
 부지 558.5㎡, 시설용량 70㎥/일, 관거 L=2.1km
- 설치비 : 3,612백만원(국비2,528, 기금650, 도비168, 군비266)
- 운영비 : 49,481천원(인건비 24,958, 경비 13,987, 기타 10,536)

□ 위탁재산 현황(총인처리시설)

- 건 물 명 : 총인처리시설
-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06-6 일원
- 시설용량 : 4,500㎥/일
- 처리공법 : G-Filter(일체형 탈인공정)
- 설 치 비 : 838백만원(국비419, 지방비 419)
- 운 영 비: 57,087천원(인건비 8,857, 경비 36,075, 기타 12,155)

□ 위탁재산 현황(초기우수저류시설)

- 건 물 명 :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
- 위　　치 :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06-6 일원
- 시설용량 : 2,500㎥/일
- 주요시설 : 유입펌프장, 저류조(3,000㎥)
- 설 치 비 : 2,900백만원(국비 2,000, 기금 500, 군비 400)
- 운 영 비 : 9,474천원(인건비 4,429, 경비 3,028, 기타 2,017)

□ 운영 및 관리계획

○ 독산, 용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공사 및 감리단으로 부터 시설물 인계·인수를 받은 후 기 준공된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과 함께 위탁 운영·관리하고자 함.

○ 독산, 용정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와 서로 다를 경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

○ 성주공공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**위탁업체 일원화를 통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**을 위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

5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2 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○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○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※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(환경부 생활하수과-3625호(2009.12.29))에 의거 지자체의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나. 예상 위탁운영비

시 설 명	합 계 (천원이하절사)	인 건 비	경 비	일반관리비	기 타 (이윤 및 부가세)
독산소규모 하수처리시설	50,391,000	21,150,064	18,512,325	1,983,119	8,745,557
용정소규모 하수처리시설	49,481,000	24,958,308	13,987,602	1,947,295	8,587,573
총인처리시설	57,086,000	8,857,377	36,075,120	2,246,625	9,907,615
초기우수 저류시설	9,474,000	4,428,688	3,028,377	372,853	1,644,283

6. 검토보고

○ 본 동의안은 준공을 앞둔 독산, 용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과 기 준공된 성주공공하수처리장내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을 함께 위탁운영·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○ 독산, 용정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총인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저류시설(CSOs)은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와 서로 다를 경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

○ 성주공공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위탁관리 업체인 ㈜세진 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**위탁업체 일원화를 통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**을 위해 타당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, 위 시설의 위탁운영비 산정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그리고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에는 “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“ 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도, 현재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,

○ 이 외에도 우리군 각종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사례가 있으므로,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모든 시설의 경우에 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